

[파일삭제] 퇴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용 파일 무단삭제 - 형사상 업무방해죄 + 민사상 손

해배상 책임: 형사처벌 수위 관련 2018년 선고 판결 사례



(1)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9. 7. 선고 2017고단533 판결 - 업무방해죄 유죄, 징역 8개월, 집행유예 2년 선고

양형의 이유

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,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24,058,491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민형사상 합의를 하기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, 피고인이 위 금원을 지급한 점,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,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(2)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. 2. 20. 선고 2017고단2232 판결 -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

유죄, 벌금 200만원 선고

외하고는 달리 자리를 비운 적은 없는 점, 위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고 피고인 외에 이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파일을 삭제할 수 있는 타인을 상정하기 힘든 점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본 범행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그다지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,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.

다만,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,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 기타 정황에 비추어 추정되는 방해된 업무의 정도, 피고인의 연령, 성행,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(3)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. 7. 11. 선고 2017고단2319 판결 - 컴퓨터등손괴업무방

해죄 유죄, 징역 6월, 집행유예 2년,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선고

양형의 이유

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상당한 영업상 손실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,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, 피고인이 삭제한 위 파일들이 대부분 복구되지 못한 점,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위 파일들이 삭제된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점, 초범인 점,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.

(4) 대구지방법원 2018. 2. 8. 선고 2017고단3273 판결 - 업무방해죄 유죄, 벌금 3백만

원 선고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형법 제314조 제1항, 벌금형 선택(비록 죄질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, 위 삭제된 파일들이 수일 내로 복구됨으로써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,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, 2008년 이후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)

민형사소송, 파일삭제, 업무방해, 기술법무, 저작권, 영업비밀, 계약분쟁, 손해배상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